

국외수학 학점인정 업무 처리 안내

<2026. 1. 학사과>

1. 국외수학 업무 흐름

- 국외수학 선발(국제처, 단과대 등) → **국외수학 허가 신청(학생)** → 국외수학 허가 승인(학과, 대학, 본부) → (사유 발생시)국외수학 변경 신청(학생) → 변경 승인(학과, 대학, 본부) → **국외수학 학점인정 신청(학생)** → 학점인정 승인(학과, 대학, 본부)

2. 국외수학 허가

1) 관련 근거

제6조(수학신청) ②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수업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등록 및 학기의 인정) ①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 중 학생교환협약에 따라 상호 수강료를 면제하기로 한 외국대학에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그 외의 대학에 수학하는 경우는 당해 외국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② 휴학기간 중에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은 인정할 수 있되, 등록학기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신청 방법

가. 신청메뉴: 학생서비스>대외교류>국외수학허가>국외수학허가신청

나. **초과학기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생성 전에 국외수학 본부 승인을 받아야** 학부생 **"6학점"**, 대학원생 **"3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 고지서가 생성되어 납부 가능하다.

다. **방문학생**인 경우 소속 **단과대학에서** 수학신청원 및 지도교수 추천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승인 요청** 필요

※ 국제처 SAP 선발자는 방문학생으로 수학 허가를 받아야 학점 인정 가능

3) 신청 시기: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 계절수업 수학은 개강 2개월 전

4) 학적 및 등록 사항

- 본부 및 대학 선발: 반드시 **서울대학교에 등록금 납부 후** 해외대학 수학 (휴학생의 경우 반드시 **복학 후 등록까지 완료**해야 함)
- 방문학생: 정규학기 국외수학은 **해당하는 학기 "휴학" 후** 해외대학 수학

3. 국외수학 학점인정

1) 관련 근거

「서울대학교 학칙」

제74조(학점) ① 교과목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며,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은 1학기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③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강의, 실험·실습·실기 및 체육 수업시간 외의 학습 시간 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2조(타 대학 등 이수 학점의 인정) ① 학생이 국내·외의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9조(교과목의 이수) 이수 교과목은 전공관련 교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교과목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취득학점) ①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은 18학점, 대학원과정은 과정별로 12학점,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학기간 동안 취득학점은 계절학기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대학(원)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소요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3조(학점의 인정 기준) 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취득한 성적 그대로 학적부에 등재하되, 평점평균 산출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학점 및 평점을 인정한다.

2) 신청메뉴: 학생서비스>수업/성적>성적>학점인정신청에서 국제교류 선택 후 신청

3) 학생 신청서류: 학점인정 신청서와 공식 성적증명서, 강의계획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부)로 제출하며, 교과목명, 성적 등급의 경우 파견교의 공식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그대로 작성하여 신청

※ 소속 학과(부) 및 대학(원)에서 ECTS 변환표, 국외수학 학점인정 변환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변환을 적용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학칙 제74조(학점) 제1항(강의 15시간→1학점, 실험·실습 등 30시간→1학점)에 따라 학점을 산정

4) 학점인정 절차: 학생이 신청한 이후 학과(부) 및 대학(원) 차원에서 학점인정 심의를 거친 이후 소속 단과대학에서 회의록을 첨부하여 학사과로 공문 제출

5) 참고사항: 학생이 국내외 수학을 통해 학점인정 받은 전체 내역(편입생 학점인정, 대학원 통산학점인정, 국내교류학생학점인정 등 포함)을 확인하여 학점인정 합계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예시: 편입한 학생이 편입생 학점인정을 이미 65학점 받은 경우(졸업학점: 130 학점) 국외수학 허가는 가능하지만 국외수학 학점인정은 불가능

4. 유의사항

1) 비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인정 불가

⇒ 교육부 공식 답변

질문: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학점인정범위가 비학위 과정도 인정 가능한지

답변: 다른 학교의 '정규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

- 언어교육원에서 이수한 과목: 불인정
- 교환학생들을 위해서만 개설된 과목: 불인정
- 국제하계강좌와 유사한 SUMMER/WINTER SCHOOL 전체 과정 혹은 SUMMER/WINTER SCHOOL만을 위해 개설된 과목: 불인정
- **정규 학위수업이 개설되는** SUMMER/WINTER SCHOOL(학교마다 여름/겨울계절 수업을 다음과 같은 호칭으로 운영하기도 함)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가능
- 국제협력본부 SAP 프로그램으로 해외수학을 하더라도, 정규수업이 아닌 SUMMER 혹은 WINTER 프로그램을 듣고 온다면 불인정

2) 비대면 100% 수업 학점인정 불가

- 단, 비대면과 대면 수업이 혼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수업은 학점인정 가능

3) 기수강과목과 중복되는 교과목 학점인정 불가

- 학생이 본교에서 들은 과목과 중복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불가능

4) 허가받은 국외수학 기간 동안 본교 수강신청 불가

Q&A

Q. 초과학기생이 6학점 이상의 수업을 듣고 와도 되나요?

A. 정규학기 취득학점은 학사과정 18학점, 대학원은 과정별로 12학점까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등록금은 학부생 6학점, 대학원생 3학점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

Q. 학점인정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 교류수학 및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학점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 최소한 졸업·수료 예정 1개 학기 전에는 학점인정 승인을 받아 학점 부족 등으로 졸업·수료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